

서울남부지방법원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3955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7. 11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광호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10.12. 가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6. 3. 23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주택도 시보증 공사	301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1.19 ~ 2023.11.19	230,000,000			2021.11.19 (지민경)	2021.09.07	2026.3.16.
지민경	건물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1.19 ~	230,000,000			2021.11.19	2021.09.07	
<비고> 주택도시보증공사: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지민경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 지민경: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.11.21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 - 제시의 건물 포함 - 임차인 지민경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,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3955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3-18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마길 16

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
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
1층 159.44㎡
2층 160.85㎡
3층 121.72㎡
지층 145.7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3층 제301호
벽돌조
55.4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3-18
대 291.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91.2분의 29.49

제시외 1-1 발코니 등 샷시조 판넬지붕 12.74㎡

감정평가액		236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8.19	236,000,000	23,600,000
2회	2026.09.22	188,800,000	18,880,000
3회	2026.10.30	151,040,000	15,104,000
4회	2026.12.04	120,832,000	12,083,200
- 제시외 건물 포함 -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 기 조건 매각			